속초시 공고 제2012 - 178호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정명령 불응)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동법 제86조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13일

속 초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2.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법내 용	예 정 된 행정처분	처분근거
(합)국제건업 최규남	144413-*******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강원02-11-19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90-4	시정명령 불응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 법제82호

3.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기 관 명 : 속초시청 건설과

나. 공고기간 : 2012. 03. 13. ~ 2012. 03. 27.(15일간)

다. 청문일시 : 2012. 03. 28.(수) 15:20

라. 청문장소 : 속초시청 본청 3층 상담실

마. 청문주재자 : 고문변호사 김희근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건설과(033-639-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